

# 정 관

##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제정	1987년 12월 01일	대한낙하산협회
개정	1989년 01월 01일	대한낙하산협회
	1994년 01월 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7년 1월 12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8년 1월 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0년 10월 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1년 12월 15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2년 12월 8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7년 1월 13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4월 19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1년 12월 1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5년 01월 1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5년 12월 18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 제1장 일반

### 1. 명칭

본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의 가맹단체로서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arachute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한다.

### 2.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3. 목적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국민에게 스카이다이빙을 보급하여 항공정신을 배양하고, 세계항공연맹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FAI)의 국제낙하산 분과위원회 (International Parachute Commission)와 제반 스카이다이빙 활동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기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4. 활동범위**

본회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항공스포츠로서의 모든 스카이다이빙 활동을 대표하며, 국제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 **5. 사업**

본회는 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5.1 협회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 5.2 스카이다이빙의 안전 기술 및 장비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 5.3 스카이다이빙에 관련된 각종 자격증의 관리업무
- 5.4 국내 및 국제 스카이다이빙 대회 개최와 국가대표 선수 구성 및 파견 업무
- 5.5 대 국민 스카이다이빙 홍보를 위한 제반 사업
- 5.6 스카이다이빙 교육기관의 인, 허가 및 업무지도
- 5.7 협회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 5.8 기타 스카이다이빙에 관련된 필요한 업무

## 제 2 장 회원

### 6.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회되고, 본 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하며, 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6.1 일반회원: 스카이다이빙 활동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본회에 가입한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한다

6.2 평생회원: 일반회원 중 10년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사람을 평생회원으로 한다.

6.3 명예회원: 스카이다이빙 발전 및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한다.

###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 7.1 권리

본회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7.1.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1.2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투표로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7.2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2.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2.2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8. 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 및 탈퇴

### 8.1 자격의상실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어 회원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며, 8.1.2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8.1.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8.1.2 본회의 사업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시

### 8.2 자격의 회복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8.1.2의 사항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회복한다

### 8.3 탈퇴

회원은 본인이 사무국에 본회의 탈퇴를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 제 3 장 총 회

### 9.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 10.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번째 토요일에 실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0분지1 이상의 요청 시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장이 소집 공고하여 실시한다.

### 11.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인원 5분지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표결권을 가진다. 단, 당년에 활동하지 않은 평생회원은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13. 총회의안

총회는 미리 통지한 의안 외에 출석회원 3분지 1 이상이 찬성하는 안건은 당일 긴급 의안으로 제의할 수 있다.

### 14. 부의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의 한다.

#### 14.1 전년도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2 신년도 사업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4.3 자산 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4 정관 개정 혹은 수정에 관한 사항

14.5 회장, 감사의 선출

14.6 기타 사항

## 제 4 장 이사회

### 15. 이사회

15.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심판위원장, 자문위원장, 교육기관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5.1.1 감사, 심판위원장, 자문위원장, 교육기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으며,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5.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각 분기 초에,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15.3 이사회는 표결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표결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4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4.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실천에 관한 승인

15.4.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4.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5.4.4 국제대회에 참가할 선수 및 대표단의 확정

15.4.5 신규 교육기관의 승인

15.4.6 관리규정, 강하자 지침서, 낙하산 정비사 관리규정 등 기타 필요한 세칙의 제정, 수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5.4.7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5.4.8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5 장 임원과 간부회원의 자격

### 16. 임원과 간부

16.1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이사, 심판위원장과 자문위원장, 교육기관장을 임원이라 하며, 임원을 보좌하는 회원을 간부라 한다.

16.2 임원과 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임원과 간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6.3 회장 및 두 명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6.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시에 복수의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16.5 이사는 사무이사, 훈련안전이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이사 및 심판위원장, 자문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교육기관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16.6 협회 운영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6.7 임기가 끝난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당연 추대되며 종신제이다

16.8 지부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으로 임명된다. 단, 지부회가 처음 설립되는 곳은 초대 지부장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지부장은 협회의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9 본 회의 간부는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16.10 훈련안전위원은 훈련안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16.11 심판위원은 심판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16.12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며, 협회 유효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이, 성별, 강하경력



에는 무관하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16.13 임원 및 간부 중에 일정기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임원 및 간부는 임기 중이라도 회장이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7. 임원 및 간부의 임무

17.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17.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3 감사는 만일, 회장이 제11조 및 제15.2조의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7.4 사무이사는 대외업무의 창구이며, 협회 내부 업무로는 회원관리, 회계관리, 회보발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주관한다.

17.5 훈련안전이사는 강하 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며, 훈련안전위원회의 장이 된다.

17.6 심판위원장은 국내 스카이다이빙 대회 규정과 심판 기준의 제정을 주관하고 심판 양성을 위한 세미나의 실시와 심판관 자격 심사를 주관 한다.

17.7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15.4항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7.8 자문위원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17.9 훈련안전위원회는 신기술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강하자 지침서와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의 수정보완, 각종 자격증의 적격여부 심사, 교육기관에 관한 자문 및 업무지도를 관장하며,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시범행사 참가자의 적격여부 심사, 강하 자격 경고 및 정지 결정을 한다

17.10 지부장은 소속 지역회원의 대표로서, 지역회원의 의사를 파악하여 협회업무에 반영하고, 소속 지역의 스카이다이빙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0.1 지부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에 사무국에 서면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활동을 추진한다.

17.10.2 지부회는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활동을 하지만 스카이다이빙 활동 외의 다른 종목의 활동은 할 수 없다.

17.10.3 지부회는 사업계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스카이다이빙 발전을 위한 경비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17.10.4 지부장은 활동계획과 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행사 직후에 서면으로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 6 장 교육 및 자격증발급

### 18. 교육

교육기관 개설 신청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본회 관리규정에 준한다

### 19.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은 본 회의 `강하자 지침서` 및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 제 7 장 자산 및 회계

### 20. 자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찬조금, 자격증 등록비, 국고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과 이로써 조성된 장비, 시설 및 비품 등으로 구성된다.

### 21.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 한다.

### 22. 자산의 처분

필요에 의하여 자산의 처분이 요구될 때에는 기본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통자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된 자산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한다.

## 제 8 장 부 칙

### 23. 부칙

23.1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회 운영세부규칙은 ‘관리규정’ 과 ‘강하자 지침서’ 및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23.2 정관에서 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지시는 이사회에서 제정하며, 본 정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민법, 기타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 24. 시행

본 정관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